

브라질연방공화국 경쟁위원회와
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간 경쟁분야 협력약정

브라질연방공화국 경쟁위원회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(이하
“양 당사자” 라고 함) 는

각자의 경쟁법을 효과적이고, 투명하고, 공정하고, 비차별적으로
집행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간 협력과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
인식하고,

경쟁법과 경쟁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
희망을 표현하면서,

경쟁분야에서 양자 관계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
목적으로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조 (목적)

- 1.1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며, 상대방의 경쟁정책, 경쟁법 및 그 집행과 관련하여 현재와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범위)

- 2.1. 경쟁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음에 중점을 둔다.
 - 2.1.1. 각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령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, 경쟁법 및 그 집행에 대한 변동상황,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된 법률, 규칙, 경험들과 정보에 대한 상호 교환
 - 2.1.2. 양 당사자간 경쟁법 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
 - 2.1.3. 양 당사자간 법집행에 관한 상호 협력
 - 2.1.4. 각 당사자의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, 타방 당사자가 주최하는 경쟁정책이나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각종 국제회의, 세미나, 기타 다른 행사들에의 참여

- 2.1.5. 각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,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마련
- 2.1.6. 경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위해 고위급 인사들간 회의 및 실무급 인사들간 상호 교류의 기회 마련
- 2.1.7. 경쟁법 집행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양 당사자간 합의된 다른 이슈들

제 3 조 (예산)

- 3.1. 각 당사자는 소속 직원이 이 약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활동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.
- 3.2.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간 어떠한 형태의 자금 이동도 요구하지 않는다.

제 4 조 (정보교환)

- 4.1.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과 규칙, 중요한 이익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, 이 약정에 따라 타방 당사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타방 당사자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.

- 4.2. 정보의 교환은 우편, 전자우편, 가능한 경우 유선으로 이루어진다.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가 사용된다.
- 4.3. 정보의 제공이 그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거나, 그 당사자의 이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을 양해한다.
- 4.4. 각 당사자는, 양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이 약정에 따라 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통보)

- 5.1. 각 당사자는 자신의 경쟁법 집행활동이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한다.
- 5.2. 위 제5조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통보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과 규칙에 위반되지 않고, 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조사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,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 신속하게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.

제 6 조 (조율)

- 6.1 양 당사자가 서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우,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법 집행 활동을 상호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.

제 7 조 (충돌의 회피)

- 7.1 양 당사자는 경쟁법을 집행하면서, 조사개시부터 집행활동의 범위, 제재나 시정조치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과정에서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7.2. 한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타방 당사자의 경쟁법 집행 활동이 자기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지하면, 이를 고지 받은 타방 당사자는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, 그 이익과 관련된 주요 진행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 8 조 (개정)

- 8.1. 이 약정은 상호 합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. 개정된 약정은 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서면 통보가 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9 조 (협약)

9.1. 양 당사자들은 양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락 책임 부서를 지정하는데 동의한다.

9.1.1. 브라질연방공화국 경쟁위원회 국제협력과

전화번호 : +55 61 3221-8583

팩스번호 : +55 61 3328-5523

E-mail : international@cade.gov.br

9.1.2.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

전화번호 : +82 44 200 4318

팩스번호 : +82 44 200 4343

E-mail : kftc@korea.kr

제10조(기간)

10.1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.

10.2.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이 약정의 체결에 관한 내부절차를 이행한다. 당사자들은 이 약정의 체결에 관한 상대방의 내부절차를 존중한다. 브라질 연방공화국 경제보호위원회는 이 약정의 요약본을 브라질 관보에 게재한다.

10.3.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별도 반대의사 표시가 없으면 3년마다 갱신된다.

10.4.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.

10.5 이 약정으로 인해 양 당사자간 어떠한 법적인 권리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.

- 10.6. 이 약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협력은 각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과 규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의 합리적으로 가용한 자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.
- 10.7. 이 약정의 해석, 적용 또는 누락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, 그리고 필요시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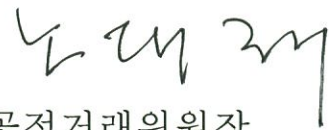
이 약정은 2014년 4월 24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서명하였으며, 동등하게 정본인 포르투갈어, 한국어,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브라질연방공화국
경쟁위원회를 대표하여



경제보호위원장
비니시우스 카르발료

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를
대표하여



공정거래위원장
노대래